

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2. 11. 1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장우)

가. 제안이유

'9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중요물품 조정의 범위

－ 현행 “단가 50만원 이상 물품”을 “정수물품”으로 한정하여 중요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(조례안 제11조의 2)

○ 불용품 감정기준액 상향조정

－ 현행 “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”에서 “500만원 이상 재활용 가능 물품”으로 상향조정(조례안 제17조 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본 조례 개정으로 중요물품 범위조정 및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물

품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인력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답변자	질의내용	답변내용
장 창조 위원	주 강 우 재 무 과 장	○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감 정할 때 감정 소요액?	○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12명, 전원찬성)